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5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인,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필리핀공화국의 사회보장청장 및 공무원보험청장은

다음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항

정의

1. 이 행정약정의 목적을 위하여, "협정"이라 함은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기타 모든 용어는 협정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항

연락기관

협정 제15조에 따라, 다음을 연락기관으로 지정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필리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청 그리고

공무원보험청

제2부

가입에 관한 규정

제3항

가입증명서

1.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협정 제7조 제1항에 언급된 파견기간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협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요

청은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으로 보내져야 한다.

3. 이 항 제1호에 언급된 증명서는 양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서식으로 발급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와 그 근로자의 사용자 및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한 부를 수령할 자격을 가진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4항

청구서 처리

1.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연락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용 가능한 서류를 청구서와 함

께 송부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과 그/그녀의 가족에 관한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을 확인한다. 검증되는 정보의 종류는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와 함께 특히 자국 법령에 따른 인정된 가입기간을 기재한 연락 서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게 송부한다. 양 당사자의 연락기관들은 공동 합의로 각 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연락서식을 규정한다.
5.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연락기관을 통하여 청구인과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6.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들은 공동 합의로 이 항 제1호에 언급된 청구서가 제출될 수 있는 서식을 규정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가 규정된 서식으로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5항

의료 검진

1.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 연락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집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 가능한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 거주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한쪽 계약당사자 연락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그 연락기관의 규칙에 따라 그리고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연락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의 수행을 주선한다.
3.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발생 비용 세부 명세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 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지체 없이 상환한다.

제6항

통계의 교환

양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각 기관이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에는 급여 유형별로 수급권자의 수와 지급된 총 급여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7항

서식 및 세부 절차

이 행정약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협정 시행에 필

요한 서식과 세부절차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8항

분쟁 해결

이 행정약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은 계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의 협의와 협상에 의해 해결한다.

제9항

약정의 수정 또는 개정

1. 각 계약당사자는 이 약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후에 이루어진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행정약정을 변경할 필요 없이 권한 있는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의 이름 변경을 서면을 통해 상호 통보한다.

제10항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아래의 날짜와 장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날짜: 2024년 3월 ___일

날짜: 2024년 3월 ___일

장소: 세종, 한국

장소: 마닐라, 필리핀